

大學評價認定의 실천 모형과 절차*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1. 머리말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지난 6 개월간에 걸쳐大學評價認定制의 制度化 推進을 目的으로 '大學評價認定制 施行方案 研究'를 主管·遂行하였다. 위의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기 별도의 研究陣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즉, ① 法的·制度的·戰略的 方案을 연구하는 팀, ② 實踐 模型과 節次를 연구하는 팀, ③ 評價認定基準 設定을 연구하는 팀으로 나뉘어져 수행되었다. 本稿는 바로 위의 세 팀 중 두번째 팀인 實踐 模型과 節次 研究 팀에 의하여 수행된 研究結果를 拔萃·要約한 것이다.

2. 大學評價認定의 實踐模型

1) 模型設計의 基礎

本稿에서의 模型(model)이란 일련의 事象의 흐름을 그 過程上의 基本要素들을 중심으로 縮約하여 하나의 構圖로 표현한 것이다. 즉, 大學評價認定이라는 하나의 事象을 一回의으로 볼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過程上 중요한 要素들을 확인하여 構圖화한 것이다. 本 模型은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原則下에 設計되었다.

첫째, 大學評價認定의 두 가지 類型인 機關評價(大學綜合評價)와 學問領域評價(學科評價) 중 大學綜合評價認定을 念頭에 두고 模型을 설계하였다.

둘째, 本 模型에서는 大學評價認定에 관련된 세개의 集團, 즉 ① 평가인정의 主管機關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② 평가인정을 받게 되는 大學, ③ 평가인정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 文教部 및 有關機關의 세 가지 集團間의 役割關係를 밝히는 데 촛점을 맞추었다. 특히 세 집단 중에서도 評價認定을 '주고 받는' 관계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측이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를 밝히는 데 촛점을 맞추었다. 이는 달리 表現해서 대학평가인정은 官(政府)이介入하지 않고, 전적으로 大學人们的 自律的 協議機構로서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그 구성원인 大學이 각각 大學評價認定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原則에 기초한 것이다.

셋째, 本 模型은 대학평가인정 절차상에 있어 中核의 基本要素들을 중심으로 時間의인 順次에 따라 각 要素間의 論理的 附隨關係(logical contingency)를 밝히는 데 촛점을 모았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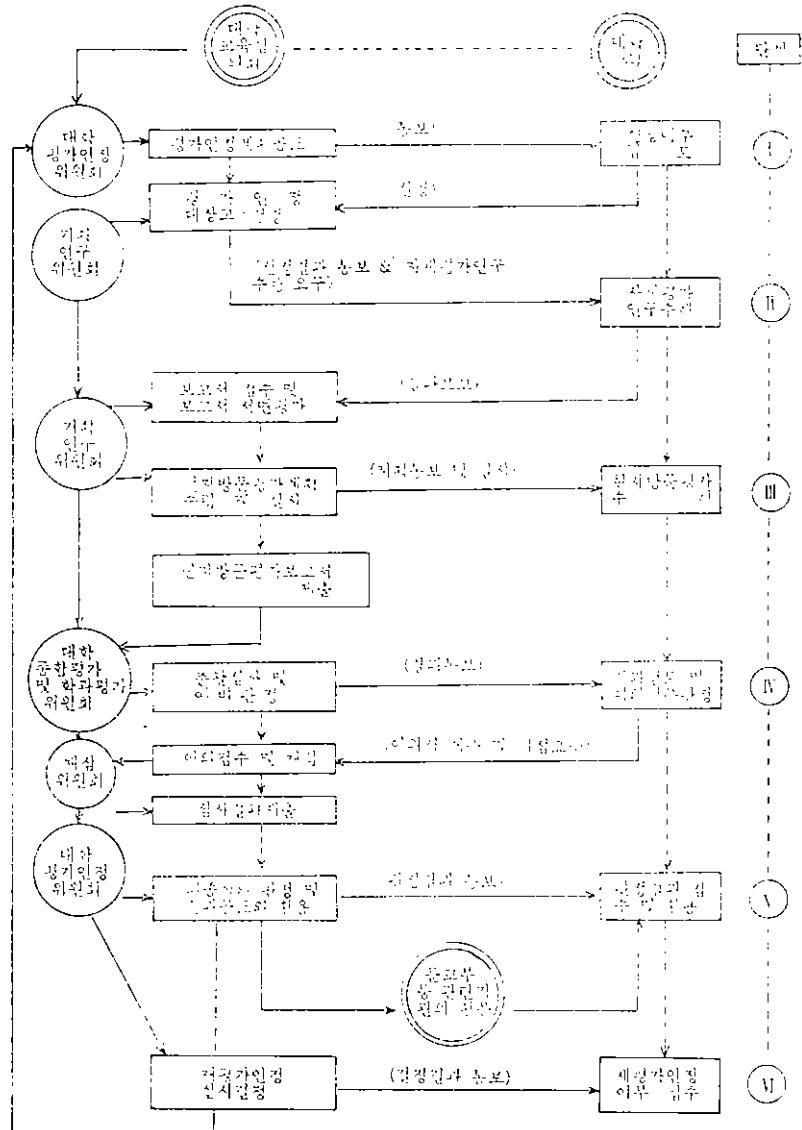
* 이 연구는 1990년도 문교부 정책 과제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후원하에 李星鎬(연세대), 金晚基(한국외대), 金漢塲(계명대), 全成連(고려대)에 의해 연구가 진행중에 있음.

앞의 일이 성공적으로 先行되어야 뒤의 일이 가능해지는 時間의 흐름에 따른 節次들을 밝힌 것이다.

끝으로 本 模型에서는 大學評價認定 節次上의
그러한 核心要素들을 대별하여 여섯 단계로 나
누었다. 本 研究는 바로 그러한 여섯 단계의 具
體的 課業들을 구명하고, 그 原則을 규정하는데
총점을 맞춘 것이다.

2) 模型의 構圖와 內容要素

〈표 1〉 대학평가인정의 실천적 절차 모형



우선 大學評價認定의 實踐的 節次模型의 구도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大學評價認定의 基本節次는 評價認定을 主管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評價認定을 받는 大學이라는 두 主體間의 相互作用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은 각각 計委員會를 두게 된다. 각 大學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大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기에 본 모형에서는 그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評價認定事業을 위하여 설정하는 위원회로서는 우선 評價認定業務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大學評價認定委員會’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再審委員會, 企劃研究委員會, 大學綜合評價委員會, 學科評價委員會 등이 있다. 이를 委員會의 機能, 構成 등에 대해서는 다른 研究陣에 위하여 상세히 연구되어 제시되겠기에 本研究팀에서는 이를 委員會들이 大學評價認定節次上에 어떻게 位置하여 機能을 發揮하게 되는가만을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段階의 內容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앞의 〈표 1〉에 제시된 模型에서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大學間의 相互作用 관계만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評價認定의 志願과 對象의 選定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大學評價認定委員會는 당해 연도 評價認定計劃을 公表하며 각 大學에 통보해 준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대학평가인정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신청한다. 그러면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기획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인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해 줌과 동시에 自體評價研究의 遂行을 요구한다.

〈2 단계〉 : 大學自體評價研究의 遂行

대학평가인정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에 따라 대학자체평가 연구를 일정한 기간내에 수행하여, 그 결과 報告書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기획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하게 한 다음 現地訪問評價計劃을 수립하도록 한다.

〈3 단계〉 : 現地訪問評價의 實施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기획연구위원회는 현지 방문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학에 통보해 줌과 동시에 現地訪問評價團을 구성하여 해당 大學에 대한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현지 방문 평가단은 현지방문평가보고서를 대학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學科評價일 경우에는 學科評價委員會에 제출한다.

〈4 단계〉 : 評價認定의 總括審查와 異議接受

대학종합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自體評價研究報告書와 現地訪問評價團이 제출한 現

地訪問評價報告書를 종합하여 總括 審查한 다음 각 大學에 대한豫備判定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예비 판정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해 주면 각 대학은 이를 검토하여, 異議가 있을 경우 再審委員會에 이의를 신청, 재심을 요구한다. 그러면 재심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再審하여 그 결과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제출한다.

〈5 단계〉 : 最終審議判定과 判定結果의 公表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연구보고서, 현지방문평가보고서, 재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심의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때 그 최종 판정 결과는 각 대학에는 물론 文教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活用하도록 한다.

〈6 단계〉 : 再評價認定의 實施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判定結果에 따라 再評價認定 시기 등을 결정하여 각 大學에 통보해 준다. 그리고 그 이후의 節次는 다음과 앞서의 〈1 단계〉로 순환·반복된다.

3. 大學評價認定의 實踐節次

1) 評價認定 志願과 對象의 選定

대학평가인정의 첫 단계인 評價認定 志願과 對象의 選定 단계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과업이 수행된다. 이를 평가인정의 두 主體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大學의 책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첫째, 당해 연도 평가인정 實施計劃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이때 그 計劃 속에는 대학평가인정의 취지와 목적, 評價認定의 基準, 志願資格, 評價認定의 節次, 自體評價研究 및 現地訪問評價의 日程과 각 大學의 責任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評價認定 계획을 공포한 다음, 評價認定 실시에 관한 實務者 세미나(또는 워샵)를 주관한다. 이때의 參加者는 물론 각 大學의 실무자(教授 및 行政職員)들이다. 大學評價認定의 여러 가지 成敗要因의 하나는 大學人们的 大學評價認定에 대한 理解와 적극적인 참여인 바, 이 세미나는 大學人们的 평

가인정에 대한 理解와 思考를 조장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大學評價認定 制度의
배경, 취지, 기본 방향, 평가인정의 기준과 節
次, 평가인정 결과의 活用方案 등이 다루어질 수
있다.

셋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으로부터
評價認定 志願을 받아 그 對象을 선정하여야 한
다. 여기에 깔린 기본 전제는 평가인정제가 大
學에 대하여 상당한 誘引價를 발휘하게 될 것
이라는 점이다. 즉, 評價認定을 받아야만 하겠다
는 大學의 欲求가 일시에 나타나서 많은 大學들
이 志願을 하게 될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단
그 對象을 選別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는 가정이다. 물론 적정 수의 大學이 志願
하였다 하더라도 選別의인 평가인정 실시는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지니기도 한다. 평가인정 대
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기초
한 범주화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大學의 설립 연
도, 學生數로 본 大學의 규모, 大學의 所在地域,
大學의 設立類型 등에 따라 '고르게' 分布될 수
있도록 평가인정 대상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 기준은 지원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
을 만한 준비를 갖추었느냐일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이제까지 실시되어 온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대학평가 사업의 결과 보고가 중요한 參考
資料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수의 大學을 평가인정할 수 있느냐, 특히
현地訪問評價를 얼마나 많은 大學에 동시에 할
수 있느냐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可用能力
도 평가인정 대상 대학의 數를 결정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평가인정 대상교
로 선정된 大學에 대해서는 각종 資料를 제공하
고, 평가 절차상의 필요한 技術的·専門的인 지
도·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평가인정 절차상의 첫 단계에서의 大學
의 역할은 평가인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즉, 이
번에 우리 대학은 평가인정을 신청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 결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학 안
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의 논의와 검토가 신중하
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대
학이 설립된 지 5년이 넘지 않은 大學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2) 大學 自體評價研究의 遂行

대학평가인정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통보받
으면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구에 따
라 각 大學別 自體評價研究를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大學評價認定委員會의 기획연구위원회는 대
학별 자체 평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안
내하게 될 것이나, 대학별 自體評價研究는 전적
으로 大學의 自律的인 연구 계획과 절차에 의해
추진됨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는 곧 自體評價研究의 目的이 大學 스스로
自律的으로 自體機關의 교육적 資源과 그 效用
성을 查定·分析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自體評價研究는 곧 自體的인 診斷인 바 大學評
價認定 절차상에서 自體評價研究가 갖는 의미는
그것이 現地訪問評價의 基礎가 될 뿐만 아니라
大學評價認定의 절차상 심의·판정을 위한 재반
資料 중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는 데 있다.

자體評價研究의 過程은 大別하여 셋으로 나뉜
다. 우선은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대
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통보받은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自體評價研究計劃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자체 평가 연구를 기획·
조정·심의하는 自體評價研究企劃委員會와 자체
평가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自體評價研究委員會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에 있
어서 지켜져야만 할 기본 원칙은 구성원의 代表
性과 專門性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성원들이
자體評價研究에 專心할 수 있도록 하는 內的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充分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自體評價研究 計劃의
수립에 있어서는 자체 평가 연구의 目的, 範圍
및 內容, 方法, 推進日程 등이 상세히 검토되어
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自體評價研究의 實行 단계에서는 參
與研究陣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體評價研究 수행에 필요한 재반 資料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自體評價研究가 결

국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각 部門別로 여러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集團으로서의 의사 결정과 합의 도출, 구성원들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매우 엄정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客觀的인 評價와 分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自體評價研究가 끝나면 이는 報告書의 형태로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기획연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報告書의 형태 또는 서식과 그 안에 담겨져야만 할 기본 내용은 각 大學에 사전에 통고됨으로써 이는 自體評價研究를 계획할 때부터 이미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서식과 내용은 최소한의 준거이자 결코 그것만을 記入하여 채우는 것으로 자체평가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自身의 문제를 전단한다는 次元에서도 그렇거니와, 밖에다 자신의 大學의 秀越함을 立證한다는 次元에서도 報告書는 充分한 논리와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서의 서식과 내용은 大學에 따라 얼마든지 擴大될 수 있고, 또 細分化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現地訪問評價의 實施

現地訪問評價는 大學의 自體評價研究報告와 함께 大學評價認定의 최종 심의 관정 자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지 방문 평가의 목적은 대학별 자체 평가 연구 보고의 事實確認에도 있겠으나, 더 큰 목적은 自體評價研究로는 드러나지 않는 大學의 潛在的側面을 통찰하여 심층적으로 分析하며, 특히 外部 專門家の 客觀的 시각을 통해 大學의 內面을 파악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現地訪問評價는 그 大學의 사람들과 外部 專門家間의 상호 협의를 통한 發展策을 강구하고 모색한다는 데도 뜻이 있다.

현지訪問評價를 위해서는 우선 事前準備가 필요한 바, 評價實施計劃을 수립하여 大學에 통보해 주는 일부터 이루어진다. 특히 이때 중요한 점은 하나의 大學을 방문하였을 때, 그 大學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1개교 2일간의 방문 원칙을 세워 평가 일정을 수립함이

중요하다.

현지 방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바, 評價委員은 大學 內外에서 관련 분야의 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가에 순수하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함이 좋다. 평가위원은 여러 개의 評價團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바, 각 평가단에는 평가 기준 영역별(교육 목표, 교육 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및 행·재정)로 최소한 1명의 專門家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단이 구성되면, 企劃研究委員會는 평가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 大學評價認定 節次 全般에 걸친 事前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현지 방문의 실제 수행은 평가단이 현지에 도착하면서 갖게 되는 평가단 사전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이때 각 大學에서 제출한 自體評價研究 보고서는 위원들 각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大學에 실제로 가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평가위원 상호간의 협의회를 한 번쯤 갖는 것이 좋다. 현지 방문 평가가 끝나면 일단은 그 大學의 대표자 및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現地相互協議會를 개최하는 것이 常例이다. 그리고 현지 방문 평가단은 그 大學으로부터 철수하게 되며, 현지 방문 평가단은 평가 사후 회의를 통하여 해당 대학의 현지 방문 평가를 종결한다.

현지 방문 평가가終結되면 각 위원들은 각자 현지 방문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단의 현지방문 평가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짓는다. 이때의 현지 방문평가보고서의 主內容은 영역별 평가 결과와 綜合的評定結果를 밝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현지방문평가보고서는 大學綜合評價委員會에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게 된다.

4) 評價認定의 總括審查와 異議接受

現地訪問評價가 끝나고 그 報告書가 대학종합 평가위원회에 제출되면 대학종합평가위원회는 해당 대학에 대한 總括審查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의 준거 자료로는 現地訪問評價報告書를 위시

하여 大學의 自體評價研究報告書, 대학의 요람, 과거 機關評價結果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자료는 自體評價研究 보고서와 그것에 기초한 現地訪問評價報告書이다. 특히 現地訪問評價委員會에서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는 ‘綜合的 評定結果’는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總括審查가 끝나면 대학종합평가위원회는 諸備判定을 내리게 되며, 그 결과는 해당 대학에 통보된다. 이때 각 대학은 예비 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異議가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再審을 再審委員會에 요청할 수 있다. 再審을 요청할 경우 再審委員會는 즉시 再審을 실시하되, 이때 그 再審結果는 大學의 선택에 따라 ‘結果受容’, ‘評價撤回’, ‘評價延長’의 형태로 처리된다. 즉, 재심 판정에 대한 大學의 對應的 行動은 위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被評價機關으로서 大學의 自救的 餘地를 제공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大學綜合評價委員會나 再審委員會에서의 의사 결정은 合議制의 원칙을 지킴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最終審議判定과 判定結果의 公表

大學評價認定委員會는 再審委員會의 活動이 끝난 다음 각 大學에 대한 제반 評價結果 보고서를 收合하여 최종 심의를 실시하고 判定을 내리게 된다. 이때의 判定은 最終的인 判定으로서 그것은 ‘優秀’, ‘良好’, ‘未治’의 세 가지의 言語的 表現으로 기술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結果는 곧 각 해당 大學에는 물론 文教部 등 關聯機關에 회보될 것이다.

6) 再評價認定의 實施

大學評價認定委員會는 일단 評價認定을 받은 大學에 대한 再評價認定 時期를 결정할 것이다. 예컨대 ‘우수’ 판정을 받는 大學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금 2차 평가인정을 실시할 것이며, 여기서도 또 ‘우수’ 판정을 받은 大學은 향후 10년간 평가인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각 대학에 대한 再

評價認定 실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再評價認定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基準은 上向 조정될 수 있겠으나, ‘未治’ 등의 判定으로 다시금 익년도에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기준에 있어 1次 때나 2次 때에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4. 大學評價認定 節次上의 內的 活用

대학평가인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스스로 教育의 質的 水準을 向上시키고 大學 本來의 使命遂行에 대한 대학의 自律的 責務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가인정의 過程과 결과는 대학 스스로 그것을 적절히 그리고 效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대학평가인정의 본래의 極지와 意의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평가인정에 대한 大學人們의 懷疑, 回避 또는 無意味 의식은 쉽게 불식되기 어렵다.

평가인정의 節次와 結果를 活用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해 두어야 할 일은 活用上의 可能性과 限界이다. 이를테면 活用의 自發性 문제이다. 즉 活用하려는 主體의 自發的인 活用意思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活用의 主體가 얼마나 순수한 目的으로 活用하려 하느냐와 같은 倫理性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들여 活用의 限時性과 局地性도 전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前提下에 평가인정 절차상에 있어 內的인 活用方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想定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大學評價認定의 節次 遂行을 통하여 大學內의 問題를 표출하고 추출하여 問題解決을 통한 大學發展의 轉機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大學의 경우처럼 自己 大學內의 問제에 대한 교수들의 研究的 關心이 낮고 또 실제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大學評價認定의 제반 절차를 통하여 大學의 問제를 스스로 통찰하고 인식하며 自律的인 改善方策을 강구한다는 것은 大學評價認定이 大學內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큰 잇점이라 하겠다.

둘째로 大學의 機構員들이 自己 大學에 대한 理解를 深化시키고, 더불어 大學의 機構員들 간의 共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크게 活用될 수

있다. 혼히 남의 大學의 문제나 大學 밖의 현상에 대해서는 뚝 넓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自己네 大學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大學評價認定 절차는 大學 구성원들의 참여와 정보의 共有를 통하여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自己네 대학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大學發展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하겠다는 등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大學內에 혼재하고 있는 여러 集團間의 상충된 要求에 기인하는 갈등을 弱化

시키는 데 있어서도 大學評價認定 節次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끌으로 대학평가인정 절차의 여러 要素는 大學의 中·長期 發展計劃을 세우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꼭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年例的인 自體 診斷과 分析은 익년도의 예산 소요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은 물론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年例的인 自體分析 評價研究는 大學의 歷史的 資料들을 누적시킨다는 뜻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